

## 경운대학교 교원보수에 관한 특별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이라 한다)에 신규로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운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호봉별로 봉급을 지급받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수의 결정)** 이 규정에 의한 보수의 결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초연봉과 성과연봉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초연봉이라 함은 당해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 지급 되는 금액이며 급량비와 연구보조비를 포함한다.
3. 성과연봉이라 함은 전학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제2장 연봉 및 수당

**제5조(연봉)** 교원의 연봉은 기초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초연봉)** 기본급, 급량비,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당해연도 기초연봉으로 한다.

**제7조(성과연봉)**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제8조(보직수당)** ① 보직에 임명된 교원에 대하여 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상위직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교원의 직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에서 정

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 1인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 제8호](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분기별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 (복리후생비)**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보칙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보수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